

산업통상부공고 제2026 - 665호

「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」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 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산업통상부장관

「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」

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안정적인 가스안전 검사·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신설하고, 일부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신설(안 별표4, 별표6, 별표12)

나.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의 면제 기준 정비 및 안전성향상 계획서
심사수수료 분류기준을 법령상 기준과 정합화(안 제9호, 별표8, 별표9)
다.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(예정)에 따른
변경된 고시 발령번호 반영(안 제6호 및 제10호)

3. 의견제출

「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」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
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
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(참조 : 자원안전팀장, 주소 : 세종시
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전팀)에
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명, 대표자명 등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전팀(전화 :
044-203-5184, 팩스 : 044-203-4743)로 문의하여 주시고, 일부개
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e.go.kr> → 예산·법령 → 고시·공고 → 공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」

일부개정(안)

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호 나목 중 “제2025-157호”를 “2026-000호”로 한다.

제9호 중 “경우에는 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를 삭제하고
“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수수료는 별표9과 같이 정한다. 다만,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신규·변경 시 안전관리 규정심사 수수료의 40%를 납부한다”로 한다.

제10호 중 “제2025-157호”를 “2026-000호”로 한다.

[별표] 제4호 중 “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” 및 “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”의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대 상		금 액	
특정설비별	규 격	생산단계검사	재 검 사
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		2천7백만원	-
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		41만원	-

[별표] 제6호 중 “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”의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대 상		금 액	
		신 규	변 경
특정설비	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	140만원	140만원

[별표] 제8호의 “중질유 분해시설” 및 “암모니아제조 또는 염화비닐모노머 시설”을 “석유정제시설”로, “납사분해시설”을 “석유화학 공업시설”로, “기타시설”을 “비료 생산시설”로 하고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대 상		금 액
고 압 가 스 특 정 제 조 시 설	석유정제시설	129만3천원
	석유화학공업시설	148만7천원
	비료생산시설	86만6천원
비고 : 대상시설중 주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86만6천원으로 한다.		

[별표] 제9호를 제10호로, 제10호를 제11호로, 제11호를 제12호로, 제12호를 제13호로,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, 제9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대 상	금 액	
	신 규	변 경
석유정제시설	102만8천원	72만원
석유화학공업시설	102만8천원	72만원
비료생산시설	74만6천원	52만2천원

[별표] 제12호 나목 중 “(6)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”의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대 상		금 액
교육과정별	교 육 대 상 자	
나. 특별교육	(6)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	3만4천900원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